

## IV. 학생 생활 규정

1. 학생 선도 규정
2. 학생 용의 복장 규정
3.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4.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5. 기타 규정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학생 생활 규정

## 1. 학생 선도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 징계)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고시”) 등 학교 규칙에 관한 법규에 의거 학생 징계를 민주적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여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학교생활의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도 원칙)

1.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으로 고려한다.
2. 학생 선도는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 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개인의品行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 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처리하도록 한다.

제3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교육”이란 자기 삶의 주체로서 학생이 일상의 전반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모든 교육 활동을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든 소통 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 3주체의 책무 등)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③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을 존중하고 따르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범의 준수
3. 다른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의 금지
4.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과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 금지
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수업 및 생활교육 등)에 대한 존중 및 방해 금지
6. 흥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 ⑤ 학교의 장(“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법인” 등을 포함)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교육을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교육을 위하여 시설, 인력 등 모든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⑧ 학교의 장은 교원의 상담 활동에 필요한 상담시설을 구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 활동 운영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⑨ 교원은 상담을 위한 최신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유지하기 위해 교육과 연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⑩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교육을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5조(생활 규정의 제·개정 절차)

1. 제·개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사 3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한다.
2. 제·개정 심의위원회에서 생활 규정 제·개정 시에는 구성원 2/3 이상이 발의하여 처리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 규정 제·개정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제2장 학생 생활교육

제7조(생활교육의 범위 및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고시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이 학생 생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제8조(시설 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련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혔을 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휴식 시간)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의사에 반하여 정규 교육 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등으로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에 따라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생을 특정 장소로 분리할 때는 학생의 휴식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학생은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학생과 보호자는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 대화 등) 등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물품 소지·사용 금지 및 분리보관 등)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소지·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학생으로부터 해당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 휴대전화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장난감,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허가받지 않은 녹음기, 이어폰, 전자기기, 화장품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가.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나. 흉기, 칼, 쇠 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등 타인에게 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다. 레이저빔 기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라.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 또는 장치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가.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마약 등 향정신성 약물 일체

나. 부탄가스, 본드 등 환각물질 일체

4.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나.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다.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라. 개인 이동 수단(PM), 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교내 운행 차량

마. 기타 위 각 목에 준하는 물품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였을 때 학생에게 주의를 비롯하여 다양한 생활교육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물품에 따른 분리 요건·기간·장소·방법 등은 아래 표에 따른다.

| 분리 요건  |                                   | 분리 기간 | 분리 장소               | 분리 방법  |
|--------|-----------------------------------|-------|---------------------|--|
| 1<br>호 | 수업 중 허가받지 않은 휴대전화 및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 수업 시간 | 교탁 위 등 교실 지정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li> <li>•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줌</li> </ul>  |
| 2<br>호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일    | 생활안전부 등 또는 교내 지정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도 교원은 분리·보관 사유, 기간, 방법 등을 해당 학생에게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서식 1]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li> <li>• 학교의 장은 보호자에게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알림([서식 1] 활용)</li> <li>•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보호자에게 되돌려줌</li> </ul> |
| 3<br>호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가능 ([서식 2] 물품 폐기 확인서)</li> </ul>  |
| 4<br>호 | 그 밖에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       |                     |  |

- ④ 물품 분리 시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도 불응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할 수 있다.
- ⑤ 교원은 제3항에 따라 분리 및 보관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소지 물품 조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하여서는 안 된다.

② 물품 조사 시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 물품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원은 소지 물품 조사 과정에서 학생 개인 신상 정보를 침범하거나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건 및 안전) ① 학생은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④ 학생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 포함)에 참여할 때 지도 교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 학생, 보호자와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 제15조(인성 및 대인관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바른 마음가짐이나 사람됨을 나타내는 태도와 행동, 예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학생들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사이버 공간을 포함한다) 등 의사소통 행위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생의 부적절한 행위 및 태도 등을 지도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간의 갈등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학교의 장이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 등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생활교육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교육만으로 학생의 인성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사항은 관계기관 인계 또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제16조(학습권 보호)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임신·출산·이성교제를 이유로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서는 안 된다.

- 제17조(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교육활동 중 학생 분리에 따른 요건, 분리기간과 장소, 방법은 다음 표와 같다.

| 생활교육                     | 요건 |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방법  | 학습지원                   |
|--------------------------|----|--|--|--|------------------------|
|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게 수업 방해 금지, 자리 이동 금지 등 주의를 준 후 실시</li> <li>• 자기 책상과 의자를 복도로 옮겨 성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li> </ul>                                  | 수업 참여,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
|                          |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li> <li>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li> </ul> | 성찰실 또는 교감실 또는 교감이 지정된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이 학생보호인력에게 학생 인계 요청</li> <li>• 해당 학생은 학생보호인력과 함께 학교별 지정 장소로 이동</li> <li>•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li> </ul> |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
|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심시간 활용 시 식사에 필요한 최소 시간(20분) 보장</li> </ul>  | 필요시 성찰 과제 부여 가능        |
|                          | 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li> <li>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li> </ul>        | 성찰실 또는 교감실 또는 교감이 지정된 장소 (60분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생을 남겨 교육하고자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li> </ul>  |                        |

※ 학교별 지정 장소는 교장(감)실, 교무실, 성찰교실, 학교 내 유휴교실 등 사안의 경중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지정

※ 학생보호인력은 교직원, 학습지원팀, 교육활동보조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 학교 여건과 교직원 간 협의를 통해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학교별 지정 장소에서의 분리 학생 지도 방법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도 감독 총괄은 교장이 담당

※ 지각의 기준은 학교 여건에 따라 명확히 설정 가능

※ 성찰 과제는 행동 성찰문(〈서식 4〉), 교과서 요약, 학습 용어 정리 등 지도교원이 상황에 맞게 제시

※ 관련 학생의 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교별 생활교육 절차에 따라 진행

※ 학생 분리지도에 관한 사항은 담임교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생활교육위원회 등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연계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시 분리 요청 교원은 필요 시 분리 학생에게 ‘성찰 과제 부여’ 또는 ‘학생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학생 분리 내용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원은 제1항제3호, 제4호에 따라 생활교육을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제1항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생활교육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 제2장(학생생활교육)의 생활교육에 대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교원의 요청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교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심의)

① 학생들의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종교인성부장, 교무기획부장, 생활안전부장, 교육연구부장, 해당 학년장, 해당학년 생활지도계, 생활교육위원회 담당 교사로 구성한다.

③ 교감은 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안전부장은 이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둔다.

⑤ 소위원회는 생활안전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부 기획, 학년 생활지도담당, 전문상담(교)사 등으로 구성하며, 생활교육위원회 담당 교사가 사무를 주관한다. 특정 학생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에는 담임교사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21조(기능)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별점기준 내, 외의 사안에 대하여 징계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내의 봉사’ 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업무 담당교원의 제청으로 생활안전부장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생활교육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22조(사안설명 및 진술권 보장)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심의 전에 생활안전부 해당 학년 담당교사로부터 사안내용의 설명과 담임교사로부터 대상 학생의 품행 등 정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담임, 학생 또는 학부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생활교육(소)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의견진술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교육(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름을 의미한다.

제23조(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학교의 장 재심의 요구) ①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소)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재심 청구) ① 학교장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 조치의 집행은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② 학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심 결정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항에 따른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적교의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법 제18조의 3에 따른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내용 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담임,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26조(징계학생 고사 응시)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고사 및 수행평가 포함)에 응시할 수 있다. 단, 그 기간은 징계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7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8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등은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9조(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30조(기록 및 사무 처리) ①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생활안전부 기획 교사가 기록 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및 보관한다.

②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해당 학년생활지도 교사가 기록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 및 보관한다.

### 제3장 징 계

제31조(종류)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3일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②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이수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3일에서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은 학교의 장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처분을 하기 전에 7일 이내의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이때의 「가정학습」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32조(징계 방법)

- ① 학교 내의 봉사
  - ㉠ 학교 내의 봉사는 누적된 벌점 총점이 1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생을 등교시켜 담당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학교 내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가능한 수업권은 보장해야 한다.
  - ㉡ 봉사활동의 기간과 내용은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 사회봉사
  - ㉠ 사회봉사는 누적된 벌점 총점이 2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역 행정기관, 공공 기관, 사회복지기관등에 위탁하여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여건이 안되면 학교내에서 징계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한다.
  - ㉡ 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의 내용과 시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 특별교육이수는 누적된 벌점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특별교육기관의 교육이나 상담치료 등의 개별교육을 이수하게 한다.
  - ㉡ 특별교육이수의 내용과 시간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한다. 학교나 지정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 출석정지는 학생선도규정 중 누적된 벌점 총점이 40점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하에 실시한다.
  - ㉡ 출석정지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 ㉠ 퇴학처분은 누적된 벌점이 50점 이상에 해당되는자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 **상점과 관계 없이 벌점 100점 도달시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한다.**
  - ㉢ 퇴학 처분을 할 때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거하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한다.
- ⑥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징계시 개인별 성향을 고려하고 상담실과 연계해서 학생 성향에 맞게 징계지도를 실시한다

제33조(징계조치 분리) 징계는 학생선도규정(상·벌점제)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조치한다.

제34조(징계 결과 처리)① 징계 처분 사실은 학생징계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며, 추후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② 학교 내 봉사와 사회봉사는 징계에 따른 것이므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상·벌점

제35조(목적) 일관된 방법으로 지도과정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며 학교규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학교 풍토를 조성한다.

제36조(방법) ① 전교사가 상·벌점을 입력하고,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SMS)로 통보 한다.

② 누적점수가 징계기준에 해당이 될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 처리한다.

③ 벌점은 상점에 의해 동일한 점수가 상쇄된다.

④ **교사 1일 상점부여는 10명으로 제한한다(단, 우수학급 전체 상점부여는 별개)**

⑤ 벌점은 1년간 누계되고, 벌점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되며, 징계가 종료된 후에도 소멸되지 않고 유지된다. 단, 상점에 의해 상쇄된다.

⑥ **상·벌점은 1년간 유효하며, 당해년도 상·벌점 상·쇄 합계 순벌점 30점 이상자는 새학년도에 벌점 20점을 이월 적용한다**

제37조 (상점별 시상 기준)

| 상점 |    | 표창 구분          | 비고   |
|----|----|----------------|------|
| 개인 | 20 | 외부 상(모범상) 우선추천 | 수시   |
|    | 25 | 학교장 표창         | 1학기말 |
|    | 40 |                | 2학기말 |

※ 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점과 관계없이 모범학생상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됨.

또한, 상점으로 인한 모범학생상 표창은 1회만 수상 할 수 있다.

제38조 (상점 기준표)

| 영역       | 번호 | 상점 내용                         | 점수                            | 비고 |  |
|----------|----|-------------------------------|-------------------------------|----|--|
| 학급·교내 생활 | 개인 | 1                             | 환경보존이나 미화, 에너지 절약 등에서 모범이 됨   | 1  |  |
|          |    | 2                             | 학습 또는 진로 탐색 활동에서 모범이 됨        | 1  |  |
|          |    | 3                             | 교사 또는 급우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함       | 1  |  |
|          | 집단 | 4                             | 체육대회 등 학급 단위 행사에서 우수 학급으로 선정됨 | 2  |  |
| 예절       | 5  | 교사 또는 교우를 대하는 태도가 예의 바름       | 1                             |    |  |
| 수업태도     | 6  | 수업에 예의 바르고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함.      | 1                             |    |  |
|          | 7  | 수업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줌.             | 2                             |    |  |
| 규정 준수    | 8  | 학교 규정(용의 복장, 두발 규정 등)을 잘 준수함. | 1                             |    |  |
| 신고       | 9  | 분실물 신고                        | 1                             |    |  |

|       |    |                                 |    |       |
|-------|----|---------------------------------|----|-------|
|       |    | 갈취, 절취, 학교 폭력을 신고함              | 2  |       |
|       | 10 | 급식 도식 행위, 흡연, 음주 등을 신고함.        | 2  |       |
| 교외 생활 | 11 | 외부(지역주민, 언론 보도 등)로부터 칭찬을 받음     | 10 |       |
| 기타    | 12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 심의 결정 |

제39조 (벌점 징계 기준)

| 벌점 | 징계 구분   | 비고            |
|----|---------|---------------|
| 10 | 학교 내 봉사 | 생활교육(소)위원회 심의 |
| 20 | 사회 봉사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
| 30 | 특별교육 이수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
| 40 | 출석정지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
| 50 | 퇴학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

제40조 (벌점 기준표)

| 영역      | 번호 | 세부내용                                 | 벌점    | 비고   |
|---------|----|--------------------------------------|-------|------|
| 예절      | 1  | 학우에게 지나치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 1     |      |
|         | 2  | 교직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경우                  | 5     |      |
|         | 3  |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 10    | ★    |
|         | 4  | 교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 30~50 | 심의결정 |
| 준법 / 질서 | 5  | 넥타이 미착용이나 교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 1     |      |
|         | 6  | 휴식 및 점심시간에 교실,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 1     |      |
|         | 7  | 급식 시 새치기나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 1     |      |
|         | 8  | 일과 중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 1     |      |
|         | 9  | 노출된 형식의 목걸이와 신체를 이용한 피어싱을 하는 행위      | 1     |      |
|         | 10 | 두발규정을 위반한 경우(염색 등)                   | 2     |      |
|         | 11 | 슬리퍼를 신고 등, 하교를 하는 경우                 | 2     |      |
|         | 12 | 교복을 착용하지 않고 등, 하교를 하는 경우             | 3     |      |
|         | 13 |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하는 경우                  | 3     |      |
|         | 14 | 일과 중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 3     |      |
|         | 15 | 급식 시 도식(盜食)을 하는 경우                   | 5     |      |
|         | 16 | 학생 출입이 제한된 교내 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경우       | 5     |      |
|         | 17 | 흥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 5     |      |
|         | 18 | 휴교 일에 근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학교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 5     |      |
|         | 19 | 문신을 하는 경우                            | 10    |      |

|          |    |                                   |                     |                       |
|----------|----|-----------------------------------|---------------------|-----------------------|
|          | 20 | 일과 중 무단외출을 하는 경우                  | 10                  | ★                     |
|          | 21 | 학교 출입 시 월장을 하는 경우                 | 10                  | ★                     |
|          | 22 | 공공문서(인장, 제 증명 포함)를 위조, 변조, 대여한 경우 | 10                  | ★                     |
|          | 23 | 현행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연류 되었다가 훈.석방된 경우   | 10                  | ★                     |
|          | 24 | 징계지도를 불응하는 경우                     | 10                  | ★                     |
|          | 25 | 불법으로 서클을 조직, 운영하거나 가입 하는 경우       | 10                  | ★                     |
|          | 26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 10                  | ★                     |
|          | 27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되어 구속된 경우               | 20                  | ★                     |
|          | 28 |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 20                  | ★                     |
|          | 29 | 품행이 극도로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0                  | 심의결정                  |
| 시설<br>훼손 | 30 | 지나친 장난으로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              | 5                   | 변상조치                  |
|          | 31 |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 5                   | 변상조치                  |
|          | 32 | 책, 걸상, 사물함 등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 10                  | ★변상조치                 |
|          | 33 | 교내 공공 시설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 10                  | ★변상조치                 |
| 수업       | 34 | 수업교재를 준비하지 않은 경우                  | 1                   |                       |
|          | 35 |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경우                    | 1                   |                       |
|          | 36 | 수업 중 엎드려 있거나 수면하는 경우(2차)          | 1                   |                       |
|          | 37 | 수업 시간 중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2                   |                       |
|          | 38 | 수업 분위기를 훼손하는 경우                   | 2                   |                       |
|          | 39 |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 2                   |                       |
|          | 40 | 수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책이나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 2                   |                       |
|          | 41 | 수업 시간에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 2                   |                       |
|          | 42 | 수업 분위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 5~                  | 성찰교실<br>입실조치<br>/심의결정 |
|          | 시험 | 43                                | 감독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 10                    |
| 44       |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경우      | 10                  | ★/해당<br>과목 0점         |
| 45       |    | 금지된 물품(휴대폰, 전자기기등)을 소지하는 경우       | 10                  | ★/해당<br>과목 0점         |
| 46       |    | 다른 학생을 강제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30~<br>50           | 해당과목<br>0점/<br>심의 결정  |
| 47       |    |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탐지하였거나 절취한 경우         | 30~<br>50           | 해당과목<br>0점/<br>심의 결정  |
| 근태       | 48 | 미인정 지각                            | 1                   |                       |
|          | 49 | 미인정 결과, 조퇴                        | 1                   |                       |
|          | 50 | 미인정 결석                            | 2                   |                       |
|          | 51 | 악의적 지각, 조퇴, 결과, 결석                | 3                   |                       |
| 약물       | 52 | 담배, 라이터, 전자담배 등을 소지한 경우           | 5                   |                       |
|          | 53 | 술을 소지한 경우                         | 10                  | ★                     |
|          | 54 | 흡연을 한 경우                          | 10                  | ★                     |

|                |    |   |         |            |
|----------------|----|---|---------|------------|
|                | 55 | 음주를 한 경우  | 20      | ★          |
|                | 56 | 환각성 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 20      | ★          |
|                | 57 | 환각성 약물을 복용한 경우  | 20      | ★          |
| 환경<br>보존       | 58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 1       |            |
|                | 59 | 껌이나 침을 뱉는 경우  | 1       |            |
|                | 60 | 책, 걸상이나 사물함 또는 기타 시설에 낙서를 하는 경우   | 1       |            |
|                | 61 | 화장실 휴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거나 함부로 버리는 경우  | 1       |            |
|                | 62 | 공공 게시물을 훼손하는 경우   | 2       |            |
| 퇴폐<br>행위       | 63 |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참여하는 경우   | 1       |            |
|                | 64 | 외설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   | 3       |            |
|                | 65 | 불건전한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 5       |            |
|                | 66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출입하는 경우  | 5       |            |
| 금품             | 67 | 금품 절.갈취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       |            |
|                | 68 | 금품 절.갈취 행위에 동조한 경우  | 20      |            |
|                | 69 | 차용을 빙자하여 금품을 갈취한 경우   | 20      |            |
|                | 70 | 금품을 갈취한 경우  | 30      | ★          |
|                | 71 | 금품을 절취한 경우  | 30      | ★          |
|                | 72 | 공금을 유용한 경우  | 30      | ★          |
| 집단             | 73 | 불법 집회에 참여한 경우   | 10      | ★          |
|                | 74 | 학생을 선동하여 불법 집회를 연 경우  | 20      | ★          |
| 정보<br>통신<br>윤리 | 75 |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br>소지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 10<br>} | ★ 심의<br>결정 |
|                | 76 | 사이버 도박과 같이 위법한 방법으로 영리를 취하기 위해<br>인터넷을 사용하는 행위  | 10<br>} | ★ 심의<br>결정 |
|                | 77 | 상대방의 동의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br>촬영·녹화·녹음·합성하거나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10<br>} | ★ 심의<br>결정 |
|                | 78 | 교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나 카메라, 녹음기 등을 이용하여 교육활동<br>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교원·학생 간의 대화 등)등을 실시간으로<br>청취하거나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 10<br>} | ★ 심의<br>결정 |
| 기타             | 79 |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         | 심의<br>결정   |

## 2. 학생 용의 복장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들의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여 학생다운 면모와 품성을 유지하고 내실 있는 인격의 함양과 기본생활 습관을 바르게 가지도록 지도하는 데 있다.

제2조(교복의 종류 및 형태)

| 구 분 | 종 류 | 색 상                      | 비                                |
|-----|-----|--------------------------|----------------------------------|
| 동복  | 상의  | 자켓                       | 감청색<br>· 단추는 교표를 새긴 제품           |
|     |     | Y 셔츠                     | 백색<br>· 왼쪽가슴 주머니 바깥부분에 교표 부착     |
|     |     | V형 스웨터                   | 감청색<br>· 왼쪽가슴에 교표부착              |
|     |     | 넥타이                      | 자주색<br>· 가는 줄기                   |
|     |     | 휘장(뱃지)                   | <br>· 학교 뱃지                      |
|     | 명찰  | 학년별 색상                   |                                  |
| 하의  | 바지  | 감청색<br>· 바지통은 구입 시 형태 유지 |                                  |
| 춘추복 | 상의  | Y셔츠                      | · 동복 혼용<br>· 춘추복 시 하의 밖으로 나오게 착용 |
|     |     | 명찰                       | · 왼쪽주머니 윗선에 부착                   |
|     | 하의  | 바지                       | · 동복 혼용                          |
| 하복  | 상의  | Y셔츠                      | · 반팔<br>· 밑자락이 하의 밖으로 나오게 착용     |
|     |     | 명찰                       |                                  |
|     | 하의  | 바지                       | · 진베이지색                          |
| 생활복 | 상의  | 카라티셔츠                    | · 반팔<br>· 밑자락이 하의 밖으로 나오게 착용     |
|     | 하의  | 반바지                      | · 진베이지색                          |

제3조 교복 규격

| 구 분 | 크기         | 85   | 88                              | 91   | 94   | 97   | 100  | 103 | 106  | 109 |      |
|-----|------------|------|---------------------------------|------|------|------|------|-----|------|-----|------|
| 하복  | 상의         | 가슴둘레 | 95                              | 98   | 101  | 104  | 107  | 111 | 115  | 119 | 123  |
|     |            | 허리둘레 | 90                              | 93   | 96   | 99   | 102  | 106 | 110  | 114 | 118  |
|     |            | 뒷기장  | 67                              | 67.5 | 68   | 68.5 | 70   | 71  | 72   | 73  | 74   |
|     | 하의         | 바지통  | 허리30인치 기준 $7\frac{3}{4}$ 인치~8인치 |      |      |      |      |     |      |     |      |
| 상복  | 상의<br>(자켓) | 가슴둘레 | 95                              | 98   | 101  | 104  | 107  | 111 | 115  | 119 | 123  |
|     |            | 어깨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            | 허리둘레 | 90                              | 93   | 96   | 99   | 102  | 106 | 110  | 114 | 118  |
|     |            | 밑단둘레 | 98                              | 101  | 104  | 107  | 111  | 115 | 119  | 123 | 127  |
|     |            | 상의장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1  | 72   |
|     | 와이셔츠       | 소매부리 | 27.5                            | 28   | 28.5 | 29   | 29.5 | 30  | 30.5 | 31  | 31.5 |
|     |            | 가슴둘레 | 95                              | 98   | 101  | 104  | 107  | 111 | 115  | 119 | 123  |
|     |            | 어깨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     |            | 허리둘레 | 90                              | 93   | 96   | 99   | 102  | 106 | 110  | 114 | 118  |
|     |            | 상의장  | 67                              | 67.5 | 68   | 68.5 | 70   | 71  | 72   | 73  | 74   |
|     | 하의         | 바지통  | 허리30인치 기준 $7\frac{3}{4}$ 인치~8인치 |      |      |      |      |     |      |     |      |

제4조(교복착용 시 준수사항) ① 교복은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입는다.

② 규정된 교복형태를 임의로 변형해서 입지 못한다.

③ 학교생활에서는 반드시 규정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행사 등 학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유복을 착용 할 수 있다.

④ 외투(자유복)는 동복 착용 시기에만, 교복 위에 착용 할 수 있으며, 원색(빨간색, 노란색)이나 형광색 그리고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구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착용 할 수 없다.

⑤ 명찰은 탈부착 식으로 하되 교내에서는 패용한다.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시에 따른다.

제5조(교복 착용 시기)

① 동복: 10월 ~ 익년 4월까지

② 춘추복: 4월말 ~ 5월, 9월초 ~ 9월말

③ 하복: 6월 ~ 8월

④ 생활복 : 생활복도 교복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교복 착용시 시기에 맞게 생활복을 입고 등,하교 할 수 있다

⑤ 단, 기후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혼복 기간을 둘 수 있다.

제6조(두발)

① 염색은 할 수 없다.

② 두발 상태는 단정히 한다.

제7조(슬리퍼의 착용) 슬리퍼는 교실 및 복도에서만 착용할 수 있다.

제8조(가방의 사용)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 하교 시에는 항상 지니고 다닌다.

제9조(부착물 및 기타) 노출된 형식의 목걸이와 신체를 이용한 피어싱과 문신(文身)은 하지 않는다.

### 3.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학교생활 및 면학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지 금지) 휴대전화는 일과 중에는 소지, 사용할 수 없으며, 아침 조례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시간에 회수한다.

제3조(사용 금지) 수업 시간 중에는 지도교사의 허락 없이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 4. 시험 부정행위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의 정규 고사(중간, 기말) 시행 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선의의 학생을 보호하며, 원칙이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부정행위라 함은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시험의 성적의 변화를 꾀하는 일체의 직·간접 적인 행위와 감독 교사의 주의나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제1장 담임 교사의 의무

제3조(고사장 배치) 담임교사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고사장 배치표에 따라 고사장을 설치한다.

제4조(게시물 철거) 교실 내 게시물 중, 시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제거한다.

제5조(시험 방해물 제거) 교실 책상 서랍에 있는 모든 물품을 제거하여야 하며, 책상 위와 벽등에 있는 시험에 방해되는 낙서를 제거한다.

## 제2장 감독 교사의 의무

제6조(시험 방해물 제거) 시험 시작 전 시험에 필요한 필기구 외, 모든 소지품이나 책상 속에 있는 물품을 가방 속에 넣어 교실 전후 면에 놓도록 지시한다.

제7조(부정행위 예방) 신체의 일부나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부정행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지시한다.

## 제3장 부정행위에 대한 사무 처리 절차

제8조(감독 교사) ① 감독 교사가 부정행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상황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학년 생활 지도 교사에게 경위서와 근거 자료(답안카드 포함) 등과 부정행위 학생을 인계한다

② 부정행위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독 교사와 해당 학생 간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는 감독 교사의 판단을 우선하여 결정한다.

제9조(해당 학년 생활 지도 교사) 학년 생활 지도 교사는 담임교사와 해당 과목 담당 교사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0조(교과목 담당교사) 교과목 담당 교사는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학생의 채점을 보류한다.

제11조(이의 신청) 부정행위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해당 학생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1일 이내에 해당 학년 생활지도 교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학생생활교육(소)위원회와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 5. 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선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裁可)를 받아 시행한다.

##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동성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

21003호)에 의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③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④ ‘장애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 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성폭력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제5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 피해학생의 보호
-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
- ㉤ 학교폭력담당교사나 학생회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제6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부모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

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본교의 교감
- ㉡ 본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 ㉢ 본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 ㉣ 판사·검사·변호사
- ㉤ 본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 ㉥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학부모 위원 선출 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한다.

- ㉔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를 한다.
- ㉕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㉖ 자치위원회 위원이 위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임의 의사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한다.
- ㉗ 자치위원 재위촉의 경우에도 신규위촉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제7조(자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다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㉔ 위원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㉕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 ㉖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 ㉗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㉘ 위원장은 자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 간사 1명을 지정한다.
- ㉙ 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㉚ 자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 ㉔ 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 ㉕ 출석위원
  - ㉖ 각종 보고사항
  - ㉗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㉘ 그 밖의 토의사항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㉔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 학생 또는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 ㉕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㉖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㉗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㉘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㉙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상담실 설치·전문상담교사 배치·전담기구 구성) ①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갖추어 상담활동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 ㉔ 인터넷 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㉕ 상담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노출 방지를 위한 칸막이 및 방음시설
- ㉖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 교사를 둔다.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진로상담부장이 겸임한다.
- ㉗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이하‘조사’라 한다)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구는 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학생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 횟수· 시간, 및 강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 학생과 교직원을 별도로 교육함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다.

㉣ 강의, 토론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와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안처리 등) ① 책임교사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에게 사안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받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사안의 내용 및 징계에 따른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음을 통보한다.

③ 책임교사는 피해학생진술서, 피해학생보호자의견서, 가해학생진술서, 가해학생보호자의견서, 담임 의견서, 담당교사의 사건경위서, 상담교사의견서, 상담전문가· 의사의 소견서 가운데 필요한 자료를 회의 자료로 제출한다. 다만, 가해학생 보호자의견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을 시는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④ 자치위원회는 회의 자료와 가해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진술을 참고로 심의· 결정사항을 학교장에게 요청 한다.

⑤ 자치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장으로 부터 조치가 확정되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조치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 제3장 보호 및 징계

제12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 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㉔ 치료를 위한 요양

㉕ 학급교체

㉖ 삭제(2012.4.11 시행)

㉗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한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교육청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제12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5항을 준용한다.(신설)

제13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 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 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 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 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 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장애학생 및 다문화학생 징계시 개인별 성향을 고려하고 상담실과 연계해서 학생 성향에 맞게 징계지도를 실시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⑨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⑩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⑪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재심절차 등)

①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재심 요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재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분쟁조정 및 비밀누설 금지

제15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분쟁조정 신청) 분쟁당사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자치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②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③ 분쟁조정신청의 사유

제17조(분쟁조정 개시) ① 자치위원회는 제16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②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위원 중에서 분쟁조정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

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분쟁조정 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의 개시 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 을 중지할 수 있다.

㉠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분쟁조정 을 거부한 경우

㉡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 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 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 분쟁조정 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을 종료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 이 성립한 경우

㉡ 분쟁조정 개시 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 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제2항 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 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 의 결과처리) ①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 이 성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가 분쟁의 경위

나 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 조정의 결과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 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학교 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명백한 사항

③ 제12조, 제12조 2,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의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

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 ① 제22조 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규정의 제·개정) ①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자치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별표1>

| 유 형          | 구 체 적 내 용   |
|--------------|---|
| 언어폭력         | ① 상호 언어 싸움을 한 자<br>② 상호 언어 싸움 후 재발 시<br>③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한 자<br>④ 공갈,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언어폭행이 재발 시<br>⑤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한 자<br>⑥ 협박, 위협 등으로 언어 폭행이 재발 시  |
| 집단 따돌림       | ① 집단 따돌림 단순 가담자<br>② 집단 따돌림 주도자<br>③ 반복적 집단따돌림 가담자<br>④ 반복적 집단따돌림 주도자   |
| 폭행 상해        | ① 칼 등 흉기 소지<br>② 폭행상해(2주 이내 가벼운 상처)<br>③ 쌍방구타(2주 이내 가벼운 상처)<br>④ 폭행상해(3~4주)<br>⑤ 폭행상해(4주 이상)<br>⑥ 폭행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후 재발<br>⑦ 폭행으로 출석정지 후 재발<br>⑧ 폭행으로 출석정지 12일 후 재발<br>⑨ 유해악물복용 환각상태에서 폭행<br>⑩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후 훈방<br>⑪ 폭행으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훈방<br>⑫ 흉기사용 폭행 상해<br>⑬ 형법상 유죄판결 |
| 금품 갈취        | ① 흉기 사용 협박<br>②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br>③ 폭력을 사용한 금품갈취 재발<br>④ 상습적 금품갈취   |
| 성폭행          | ① 성추행 및 성희롱(동성 간 포함)<br>② 성폭행(동성간 포함)   |
| 사이버 폭력       | ① 사이버 상에서의 공갈, 협박, 모욕 등<br>②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
| 폭력서클 및 집단 폭행 | ① 폭력서클 단순 가담자<br>② 폭력서클 조직 및 주도자<br>③ 폭력서클 해체 후 재조직한 자<br>④ 집단폭행 가담자<br>⑤ 집단폭행 선동 및 주도자<br>⑥ 흉기를 사용하여 집단폭행한 자   |

#### 부 칙

1. 이 위원회의 규정은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 8887호, 2008.03.14)과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21003호, 2008.09.12)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2.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8년 06월 28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9년 01월 09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5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6년 04월 03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서식 1>

##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               |             |                                   |              |
|---------------|-------------|-----------------------------------|--------------|
| 학생 성명         |             | 학번                                |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 시                                 |              |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분리보관 물품       |             |                                   |              |
| 분리보관<br>해당 요건 | 요건          |                                   | 해당 사항에<br>체크 |
|               | 1호          | 수업 종료 후에도 보관하는 물품                 |              |
|               | 2호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
|               | 3호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               | 4호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성고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         |             |    |             |
|---------|-------------|----|-------------|
| 학생 성명   |             | 학번 |             |
| 분리보관 일시 | 년    월    일 | 시  |             |
| 분리보관 기간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분리보관 물품 |             |    |             |
| 분리보관 경위 |             |    |             |

-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동성고등학교장

<서식2>

## 물품 폐기 확인서

|          |  |
|----------|--|
| 학생 성명    |  |
| 학년/반     |  |
| 물품 발견 일시 | 년 월 일 시  |
| 즉각 폐기 물품 |  |
| 즉각 폐기 경위 |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9항, 학생생활규정 제00조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동성고등 학교장 귀하

<서식3>

## 일시 분리장소(성찰실) 분리 지도 대장

관리번호 0000-00

| 일자   | 20 . . . ( )   |        | 확인(서명)                                     | 분리장소 담당자           |
|------|--|--------|--|--------------------|
|      | 교시   | 수업담당교원 |  | 분리사유               |
| 내용   | 1  | ○○○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br>깨워도 계속 누워있음<br>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 10101 안00(5/1,7/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이사항 | 1. 10101 장00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교원에게 알림<br>2. 10101 장00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        |  |                    |

<서식4>

| 행동 성찰문(성찰하는 글쓰기)                                   |   |       |           |
|--|---|-------|-----------|
| 일자   | 년 | 월     | 일         |
| 학번   |   | 학생 성명 |           |
| ※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보세요                   |   |       |           |
| 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         |   |       |           |
|  |   |       |           |
| 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   |       |           |
|  |   |       |           |
| 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       |           |
|  |   |       |           |
| 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    |   |       |           |
|  |   |       |           |
|  |   | 년     | 월         |
| 확인 교원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보호자 확인서

보호자님께

동성고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당)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시) 즉시 (담당)교사에게 연락(SMS(문자메세지)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00-000-0000 (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

20 년 월 일

동 성 고 등 학 교 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 가정학습 일시 | 가정학습 내용                    |
|---------|----------------------------|
| 년 월 일   |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
| 특이사항    |                            |

|           |  |            |
|-----------|--|------------|
| 보호자 성명    |  | (서명)       |
| 보호자 연락처 1 |  | 학생과의 관계( ) |
| 보호자 연락처 2 |  | 학생과의 관계( ) |

## <서식6>

###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 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옆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 성 고 등 학교장

